제302회 정례회 2011. 7. 22.(금)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1. 7. 22.(금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7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4일

(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박성수)

가. 제안이유

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「함께하는 충북」 실현을 위하여 남부출장소를 설치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□ 남부출장소 설치
 - 시행시기 : 2012. 1. 1.
 - 관할구역 :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
 - 담당사무
 -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
 -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손자용)

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「함께 하는 충북」실현을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 북부출장소를 개청한 후, 보은, 옥천, 영동군을 관할하는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- 남부출장소는 2012년 1월 1일 개청하며,
- 관할구역은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의 3군으로 하고,
- 담당사무는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임.

남부출장소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출 장소에 이어 보은, 영동, 옥천군을 관할할 남부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으로 남부출장소 개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**과 :** 원안의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5장 제57조 앞에 "제1절 충청북도북부출장소"를 삽입하며,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57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 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(이하"북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.
 -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.

제58조 중 "출장소"를 "북부출장소"로 한다.

제59조 본문 중 "출장소장"을 "북부출장소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출장소"를 "북부출장소"로 한다.

제59조 다음에 제2절(제60조부터 제62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절 충청북도남부출장소

- 제60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(이하"남부출장소"라 한 다)를 설치한다.
 -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.
 -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,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.
- 제61조(소장)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2조(소관사무)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- 1.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- 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
- 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장 출장소	제5장 출장소
	제1절 충청북도북부출장소
제57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북부지역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출장소의 소재지는 관할구역 내에 둔다. ③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.	제57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(이하"북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.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.
제58조(소장)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58조(소장) <u>북부출장소</u> 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 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제59조(소관사무) <u>출장소장</u>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<u>출장소</u>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. ~ 3. (생략)	제59조(소관사무) 북부출장소장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북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절 충청북도남부출장소
	제60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(이하"남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.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,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.
	제61조(소장)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 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 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	제62조(소관사무)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 정 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 에 관한 사항 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레로 정한다
 - ③~⑥ (생략)
- 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